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2017년 3월 1일 시행

목차

제 1 조.	적용범위.....	3
제 2 조.	해석.....	3
제 3 조.	통지, 서면 교신 및 기간의 계산.....	3
제 4 조.	중재절차 참여.....	4
제 5 조.	중재절차 개시.....	4
제 6 조.	복수 계약.....	4
제 7 조.	중재 신청.....	4
제 8 조.	중재신청 통지 및 중재신청서의 송부.....	5
제 9 조.	답변서.....	5
제 10 조.	반대신청.....	6
제 11 조.	중재인의 수.....	7
제 12 조.	3인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	7
제 13 조.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	9
제 14 조.	중재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철회; 중재신청, 반대신청, 답변서 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변경 또는 보완.....	9
제 15 조.	중재 절차의 병합.....	10
제 16 조.	중재인에 관한 일반 규정.....	10
제 17 조.	중재인의 교체.....	11
제 18 조.	중재판정부의 사실확인 권한.....	12
제 19 조.	중재판정부의 증거수집 권한.....	12
제 20 조.	중재판정부의 증인소환 권한.....	13
제 21 조.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	13
제 22 조.	중재지.....	14
제 23 조.	중재 언어.....	14
제 24 조.	준거법.....	15
제 25 조.	심리기일.....	15
제 26 조.	심리의 연기.....	16
제 27 조.	당사자의 불출석.....	16
제 28 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17
제 29 조.	조정.....	18

제 30 조.	분쟁해결절차의 정지	18
제 31 조.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과 의사결정 원칙	18
제 32 조.	중재판정	19
제 33 조.	중재판정의 정정 및 해석, 추가판정	19
제 34 조.	중재비용	20
제 35 조.	중재비용의 납입	21
제 36 조.	중재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한 결정	22
제 37 조.	신속절차	22
제 38 조.	일반 조항	22
부록 1	표준중재조항	24
부록 2	신속절차 표준중재조항	25

한국어 번역 제공: 법무법인(유) 화우

Korean language translation by Yoon & Yang LLC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2017년 3월 1일 시행

제 1 조. 적용범위

1.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적용한다.
2. 이 규칙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2017년 3월 1일 또는 그 후에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분쟁의 해결에 적용한다.

제 2 조. 해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Centre)”는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를 의미한다.
2. “중재인명부”는 센터의 중재인명부를 의미한다.
3.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들 또는 단독 중재인을 포함한다.
4. “신청인”은 1인 또는 복수의 신청인, “피신청인”은 1인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을 포함한다.

제 3 조. 통지, 서면 교신 및 기간의 계산

1. 당사자가 센터에 제출하는 통지나 서류는 센터가 중재판정부의 각 구성원, 상대방 당사자, 그리고 센터 보관용으로 각 1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센터가 당사자들에게 발송하는 통지나 서류는, 당사자들이 제공한 주소로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및 기타 송신 기록이 확인되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발송한다.

3. 센터가 당사자들에게 발송하는 통지나 서면은 당사자가 이를 수령한 날, 또는 제 2 항에 따라 적합하게 발송된 경우 송달된 일자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규칙에 따라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 3 항에 따른 통지 또는 서류가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그러한 기간의 초일이 수령지에서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다음 최초 영업일부터 기산한다. 또한, 그러한 기간의 말일이 수령지에서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만료한다. 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은 기간에 산입된다.

제 4 조. 중재절차 참여

1.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중재절차에 참여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참여하도록 서면으로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는 센터는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의 참여 권한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당사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중재절차 개시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 개시일은 센터가 이 규칙 제 7 조 제 2 항에 따라 신청인의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 한다.

제 6 조. 복수 계약

2 개 이상의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2 개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들은, 그 청구들이 하나 또는 수개의 중재합의에 기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단일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되도록 하나의 중재신청서로 제출될 수 있다.

제 7 조. 중재 신청

1. 센터에서 중재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재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a) 중재신청서 작성 연월일;
 - b) 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 c) 분쟁 내용에 대한 요약;
 - d) 청구의 근거;
 - dd) 분쟁 가액 및 신청인의 기타 청구;
 - e) 이 규칙 제 12조 제 1 항 또는 제 13조에 따라 신청인이 중재인으로 지명하거나, 센터에 중재인으로 선정을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
 - g) 신청인이 조직인 경우 그 조직의 법적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3. 신청인은 중재신청서와 함께 중재합의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재신청, 중재합의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이 규칙 제 3조 제 1 항에 따라 충분한 수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 8 조. 중재신청 통지 및 중재신청서의 송부

당사자 간에 기간에 대한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센터는 중재신청서, 중재합의 및 기타 관련 서류가 제출되고 이 규칙 제 35 조에 따른 중재비용의 예납이 이루어진 날부터 10 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 통지, 중재신청서, 중재합의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답변서

1. 당사자 간에 기간에 대한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피신청인은 중재신청 통지, 중재신청서, 중재합의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a) 답변서 작성 연월일;
 - b)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c) 답변의 근거;

d) 이 규칙 제 12조 제 2항 또는 제 1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중재인으로 지명하였거나, 센터에 중재인으로 선정을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

dd) 피신청인이 조직인 경우 그 조직의 법적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피신청인이 중재합의의 존부, 유효성 및 수행 가능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그러한 주장을 답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이의신청권은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경우, 피신청인은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센터에 중재인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센터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신청서는 전항에 따른 30일의 기한 또는 연장된 답변서 제출 기한의 만료 전에 서면으로 센터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제 1항에 따른 30일의 기한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센터에 중재인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답변서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이 규칙의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충분한 수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4.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제 10 조. 반대신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반대신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중재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반대신청서는 (답변서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답변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반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a) 반대신청서 작성 연월일;

b) 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 c) 반대신청 내용의 요약;
 - d) 반대신청의 근거;
 - dd) 반대신청가액 및 피신청인의 기타 청구;
 - e) 피신청인이 조직인 경우 그 조직의 법적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피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3. 반대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이 규칙 제 3 조 제 1 항에 따라 충분한 수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4. 당사자 간에 기간에 대한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센터는 반대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가 제출되고 이 규칙의 제 35 조에 따른 중재비용의 예납이 이루어진 날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반대신청 통지, 반대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5. 당사자 간에 기간에 대한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반대신청 통지, 반대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이 규칙 제 3 조 제 1 항에 따라 충분한 수의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신청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와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병합하여 심리한다.

제 11 조. 중재인의 수

1. 이 규칙에 따른 중재사건은 3 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 또는 단독 중재인이 심리한다.
2. 당사자들이 분쟁을 단독 중재인의 심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3 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가 분쟁을 해결한다.

제 12 조. 3 인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

1.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센터에 중재인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복수인 때에는 신청인들 간의 합의로 중재인 1 인을 지명하거

나 센터에 중재인 선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센터에 고지하여야 한다. 지명된 중재인이 중재인명부에 등재된 중재인이 아닌 경우, 신청인은 해당 중재인의 주소를 센터에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센터에 중재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센터장은 선정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인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피신청인은 중재신청 통지, 중재신청서, 중재합의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센터에 중재인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복수인 때에는 피신청인들 간의 합의로 중재인을 지명하거나 센터에 중재인 지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센터에 고지하여야 한다. 지명된 중재인이 중재인명부에 등재된 중재인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은 해당 중재인의 주소를 센터에 고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센터에 중재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센터장은 지정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인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위 30일의 기한 내에 중재인 지명 또는 선정 요청을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30일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로서 피신청인들이 위 기한 내에 중재인 1인의 지명을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선정 요청에 대해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해당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인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지명하거나 센터장이 선정한 2인의 중재인은 그 지명 또는 선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 3의 의장중재인을 지명하고 이를 센터에 고지하여야 한다. 센터가 위 기한 내에 고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해당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 3의 의장중재인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센터장은 본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및 이 규칙 제 13 조에 따라 중재인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 및 이 규칙에 따른 중재인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또한, 센터장은 선정된 중재인이 분쟁을 효과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3 조.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피신청인이 중재신청 통지, 중재신청서, 중재합의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단독 중재인을 지명에 합의하거나 센터에 단독 중재인 선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센터에 고지하여야 한다. 지명된 중재인이 중재인명부에 등재된 중재인이 아닌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중재인의 주소를 센터에 고지하여야 한다.

센터가 단독 중재인 지명 또는 선정 요청에 대한 고지를 위 30 일의 시한 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해당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중재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철회; 중재신청, 반대신청, 답변서 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변경 또는 보완

1.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최종 심리가 종결되기 전에 중재신청, 반대신청, 답변서, 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변경이나 보완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이 규칙 제 3 조 제 1 항에 따라 충분한 수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변경이나 보완이 중재판정에 지장 또는 지연을 초래할 목적으로 남용되거나 해당 분쟁에 적용되는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중재판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이나 보완을 불허할 수 있다

제 15 조. 중재 절차의 병합

1. 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라 진행 중인 두 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하나의 중재절차로 병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복수의 중재절차의 병합 여부는 센터가 관련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복수의 중재절차는 먼저 개시된 중재절차로 병합된다.

제 16 조. 중재인에 관한 일반 규정

1. 중재인으로 지명 또는 선정된 자는 그 지명 또는 선정 통지의 수령 후부터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공정성, 독립성, 또는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센터에 적법하게 고지해야 하며, 그 고지 내용은 당사자들에게 통지된다.
2. 중재인은 어느 당사자의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3. 중재인으로 지명 또는 선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
 - a) 중재인이 당사자의 친척이거나 대리인인 경우;
 - b) 중재인에게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c)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가 없는 한, 중재인이 현재 센터에서 진행 중인 분쟁 사건에서 조정인, 또는 어느 한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변호사였던 경우;
 - d) 중재인 후보자가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 dd)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e) 중재인이 사안에 적용되는 중재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인은 어느 당사자와도 사적으로 만나거나 교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인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교신할 수 없다.
5.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특정 자격요건에 대해 합의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 지명 또는 선정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해당 중재인의 자격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교체신청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중재인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 경우, 중재인의 교체는 이 규칙 제 17 조에 따른다.

제 17 조. 중재인의 교체

1. 중재인이 이 규칙 제 16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인은 해당 분쟁 해결에 대한 관여를 거절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의 해결을 거절하는 중재인의 서면, 또는 일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중재인 교체 신청은 센터에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는 센터장이 중재인의 교체를 결정한다.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에는, 중재판정부의 다른 중재인들이 그 중재인의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중재판정부의 다른 중재인들이 교체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결정한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경우에도 센터장이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센터장이 단독 구성원의 교체를 결정한다.

중재인의 교체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다른 중재인들 또는 센터장의 결정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중재인의 교체를 중재판정부의 다른 중재인들 또는 센터장이 결정하는 경우, 새로운 중재인은 이 규칙 제 12 조와 제 13 조에 따라 지명되거나 선정된다. 교체된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다시 지명하거나 센터장이 다시 선정할 수 없다.

중재판정부의 다른 중재인들 또는 센터장이 중재인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중재인은 계속하여 분쟁의 해결에 관여한다.

4. 센터 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인의 교체에 관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5. 중재인의 사망 또는 불가항력 사유나 장애로 분쟁해결에 계속 관여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중재인의 지명 또는 선정은 이 규칙 제 12 조와 제 13 조에 따른다.

6. 새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전 중재판정부가 진행했던 심리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재심사할 수 있다.

제 18 조. 중재판정부의 사실확인 권한

중재판정부는 분쟁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를 적절한 수단으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일방 당사자와 만나거나 논의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일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참석 하에 또는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제 3 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제 19 조. 중재판정부의 증거수집 권한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증거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당사자들은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증인들에게 분쟁과 관련된 정보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3.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일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인 자산을 감정하거나 평가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감정이나 평가에 관한 비용은 신청하는 당사자가 부담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비용분담을 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나 평가의 비용이 전액 납입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서류들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4.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일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전문가가 관련 서류, 동산, 또는 자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전문가는 서면 보고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보고서를 받은 후, 당사자들에게 해당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고 그 보고서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가 의견에 관한 비용은 신청하

는 당사자가 부담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비용분담을 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가 비용이 전액 납입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서류들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5. 중재판정부 또는 일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증거 수집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구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중재판정부의 증인소환 권한

1.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중재 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증인의 비용은 신청하는 당사자가 부담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비용분담을 정한다.
2. 중재판정부로부터 적법하게 소환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고 그 증인의 불출석이 분쟁해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관할 법원에 증인을 심리에 참석하도록 소환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서에는, 분쟁해결이 진행 중인 분쟁의 내용, 증인의 이름과 주소, 증인을 소환하여야 하는 이유, 그리고 증인이 참석하여야 할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적법하게 소환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연기하거나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서류들을 기초로 심리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제 21 조.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임시적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a) 분쟁 대상 자산의 현상 변경 금지;
 - b) 분쟁 당사자의 특정 행위 금지, 또는 중재 절차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행위의 이행;

- c) 분쟁 대상 자산의 압류;
 - d) 일방 또는 복수의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자산의 보존, 보관, 판매 또는 처분 명령;
 - dd) 당사자 간 잠정적 금전 지급 명령;
 - e) 분쟁 대상 자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 금지
2. 임시적 처분의 명령, 변경, 보완 및 종료에 관한 절차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3.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가 법원에 본 조 제 1 항에 따른 임시적 처분 중 하나 이상의 임시적 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중재판정부에도 동일한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즉시 센터에 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중재합의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중재지

1. 중재지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한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곳으로 중재지를 정한다.
2.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수단으로 그 어떤 장소에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3 조. 중재 언어

1. 섭외적 요소가 없는 분쟁의 경우, 중재 언어는 베트남어로 한다.
2. 섭외적 요소가 있고, 적어도 한 당사자가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법인인 경우, 중재 언어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계약서의 언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 진행 시 사용할 한 개 또는 복수의 언어들을 정한다.

3. 특정문서의 언어가 중재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는 센터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그 번역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4 조. 준거법

1. 섭외적 요소가 없는 분쟁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베트남 법을 적용한다.
2. 섭외적 요소가 있는 분쟁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을 적용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을 결정한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분쟁 해결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적합한 관행을 적용할 수 있다.

제 25 조. 심리기일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심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전화 회의, 화상 회의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센터는 심리기일로부터 늦어도 15 일 전까지 당사자들에게 심리 출석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심리기일이 연기되거나 중재판정부가 추가 심리기일을 개최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심리 출석 통지를 발송하는 기한을 정한다.
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당사자들은 증인 및 자신들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줄 사람이 심리기일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권리를 가지며, 심리기일 이전에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산을 감정하거나 평가하는 조직이나 개인 및 제 19 조에 따른 전문가를 심리기일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심리기일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4. 심리기일에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더 이상 제출할 관련 서류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해 심리기일을 최종 심리기일로 선언할 수 있다. 최종 심리기일 이후에 중재판정부는 추가 서류나 증거를 고려할 의무가 없다.

제 26 조. 심리의 연기

1. 일방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심리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심리기일의 연기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연기의 이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가 심리 연장 신청을 심리기일로부터 7일 전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심리기일의 연기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관련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여부와 연장시한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2. 중재판정부는 심리기일 진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 27 조. 당사자의 불출석

1. 신청인이 적법하게 심리기일에 출석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심리장소에서 퇴정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이 심리를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심리기일에 출석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심리장소에서 퇴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서류 및 증거에 의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한다.

2.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심리기일에 출석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심리장소에서 퇴정하는 경우, 피

신청인은 반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반대신청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출석 없이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서류 및 증거에 의거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쉼석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8 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1.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재조항은 계약의 나머지 조항들과는 독립된 합의 조항으로 취급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중재조항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본안을 판단하기 전, 일방 당사자의 이의 제기 여부와 관계 없이 중재합의의 존부, 중재 합의의 유효성, 중재합의의 이행가능성,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등을 판단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가 존재하고, 유효하며, 이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를 지속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이거나,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하여 별도의 결정을 내리거나,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유월을 인지한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이의를 심리하고 그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 29 조. 조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성립 의사록을 작성하여 당사자들과 중재인들 또는 단독중재인이 서명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성립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30 조. 분쟁해결절차의 정지

1. 분쟁해결절차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정지된다:
 - a) 자연인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그 권리 및 의무를 상속하는 자 없이 사망한 경우; 조직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조직 없이 운영을 종료하거나, 파산, 해산, 병합, 합병, 분할, 분리, 조직 변경을 하게 된 경우;
 - b)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c) 신청인이 이 규칙 제 27 조 제 1 항에 따라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해결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d)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절차 종료에 합의한 경우;
 - dd) 이 규칙 제 28 조 제 2 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e) 법령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중재판정부는 분쟁해결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는 센터장이 분쟁해결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31 조.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과 의사결정 원칙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중재판정 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과반수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은 의장 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제 32 조. 중재판정

1. 중재판정문은 서면으로 작성된다. 중재판정문에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 a) 중재판정 작성 연월일 및 중재판정지;
 - b)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c) 중재인들 또는 단독 중재인의 성명;
 - d) 중재신청 및 분쟁 내용의 요약; 반대신청 및 분쟁 내용의 요약;
 - dd) 중재판정의 근거.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판정의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함;
 - e) 판정 주문;
 - g) 중재판정의 집행 기간;
 - h) 중재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의 분담;
 - i) 중재인들 또는 단독 중재인의 서명.
2. 특정 중재인이 중재판정문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이 이를 중재판정문에 기록하고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재판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3. 중재판정은 최종 심리의 종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4. 중재판정부는 판정일 이후 즉시 중재판정문을 센터에 송부한다. 센터는 즉시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문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송부한다.

당사자들은 센터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중재판정문의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5.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제 33 조. 중재판정의 정정 및 해석, 추가판정

1. 당사자들이 기한에 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의 오기, 인쇄오류, 오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 계산 실수

또는 부정확한 계산에 의한 오산의 정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정정 신청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정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정정 신청을 통지 받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오류를 정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 후 30 일 이내에 직권으로 전항에 언급된 오류를 정정하고 정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이 기한에 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해당 중재판정의 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석 신청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해석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해석 신청을 통지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석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들이 기한에 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제기하였으나 중재판정에서 판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가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판정 신청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추가판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신청을 통지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내려야 한다.
5. 중재판정부는 본 조 제 1 항, 제 3 항 및 제 4 항에서 각 규정한 중재판정의 정정이나 해석, 추가판정을 위한 기한을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문의 정정이나 해석에 관한 결정 또는 추가판정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7. 이 규칙 제 31 조 및 제 32 조 제 2 항은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판정에 준용한다.

제 34 조. 중재비용

중재비용에는 다음 각 항의 항목이 포함된다:

1. 중재인들의 보수;
2. 센터의 관리비용;
3. 비용 추산 당시 시행 중인 센터의 서면 지침에 정하여진 중재인들의 출장, 숙박 및 기타 관련 경비; 중재판정부의 요청에 따른 기타 지원 경비.
4. 자산에 대한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비용, 전문가의 자문 비용.

제 35 조. 중재비용의 납입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제출 당시 시행중인 센터의 중재비용표에 따른 이 규칙 제 3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비용 전액을 중재신청서 제출 후 납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센터가 정한 기한 내에 경비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은 반대신청 제출일 당시 시행중인 센터의 중재비용표에 따른 이 규칙 제 3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비용 전액을 반대신청의 제출 후 납입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센터가 정한 기한 내에 경비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칙 제 34 조 제 3 항의 비용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예납되어야 한다. 센터는 중재판정부와 상의하여 예상비용을 추산하고, 일방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이를 예납하도록 요청하며,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은 센터로부터 비용예납요청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비용 전액을 예납해야 한다. 비용 전액이 예납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분쟁 해결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계속하기 위하여 일방 당사자는 센터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비용을 예납할 수 있다. 만약 비용이 전액 예납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분쟁해결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4. 이 규칙 제 34 조 제 4 항이 정하는 비용은 이 규칙 제 19 조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5. 센터는 중재판정 이전에 이 규칙 제 34 조 제 3 항의 비용을 계산하여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하기 전에 이를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예납 비용이 실제 비용을 초과한 경우, 센터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실제 비용이 예납 비용을 초과한 경우, 당사자는 부족한 금액을 센터에 납입해야 한다.

제 36 조. 중재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한 결정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의분담을 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법률비용 및 기타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37 조. 신속절차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신속절차를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2. 신속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판정부는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 b) 센터 또는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c)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전화회의,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8 조. 일반 조항

1. 센터는 분쟁의 해결주체가 아니며, 분쟁의 해결은 중재판정부가 한다.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센터에서의 분쟁해결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중재판정부는 어느 당사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센터 또는 중재판정부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기한을 단축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나, 센터 또는 중재판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당사자가 중재 관련 법령의 규정, 이 규칙 또는 중재합의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최종 심리기일을 선언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이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센터와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며, 분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6. 센터장은 부센터장에 권한을 위임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7. 센터의 서기는 이 규칙 및 센터의 규정에 따라 중재절차 상의 임무를 수행 한다.
8. 센터는 센터의 지부에 권한을 위임하여 이 규칙이 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부록 1 표준중재조항

부록 1:

표준중재조항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분쟁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VIAC”)에서 VIAC의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또는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분쟁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VIAC”)에서 VIAC의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이외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보충할 수 있다.

- (a) 중재인의 수는 [1인 혹은 3인]으로 한다.
- (b) 중재지는 [도시명 및/혹은 국가명]으로 한다.
- (c) 계약의 준거법은 [____]의 실체법으로 한다.*
- (d) 중재절차에서 사용할 언어는 [____]으로 한다.**

비고

* 섭외적 요소가 있는 분쟁의 경우

** 섭외적 요소가 있는 분쟁의 경우 또는 적어도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법인인 경우

부록 2 신속절차 표준중재조항

부록 2:

신속절차 표준중재조항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분쟁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VIAC”)에서 VIAC의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은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되는 중재를 VIAC 중재규칙 제 37조의 신속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한다.”

이외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보완할 수 있다.

- (a) 중재지는 [도시명 및/혹은 국가명]로 한다.
- (b) 계약의 준거법은 [____]의 실체법으로 한다.*
- (c) 중재절차에서 사용할 언어는 [____]으로 한다.**

비고

* 섭외적 요소가 있는 분쟁의 경우

** 섭외적 요소가 있는 분쟁의 경우 또는 적어도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법인인 경우

한국어 번역 제공: 법무법인(유) 화우

Korean language translation by Yoon & Yang LLC